

July 14,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43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7. 6. ~ 7. 10.)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 7. 3. 확정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투자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2020. 7. 3.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업계, 수소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함. 주요 내용으로 ① 수소에너지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물류기업들은 '21년부터 수소 화물차(5대)를 수도권-중부권 등 시범노선 구간에서 시범 운행, ② 군포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21년 전기화물차(1톤) 충전시설과 운전자 쉼터를 결합한 형태의 수소 화물차 충전 스테이션 조성, ③ 사업용 수소 화물차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위한 수소물류얼라이언스 발족



[국토부2]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20. 7. 8.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에서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②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 규정, ③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을 추가하여 신자재 등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유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2020. 7. 9.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으로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추가, ②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개정 대상에 포함, ③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전기·전자제품에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확대



[복지부·과기부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논의

2020. 7. 9.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관련한 1,936억원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확진자 유전자 분석 등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163억원), ②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 및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지원(30억원), ③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센터 간 정보공유 체계 등 구축(36억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1,936억 원 투입



* 제3차 추가경정예산(확정) 투자내용

규모	총 35.1조원 확정	
투자내용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등	1.9조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등	3.1조원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7조원
	1)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0조원
	•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 수혜 등	9.1조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확대(+2,800호, 4,845억원),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 등	0.9조원

투자내용	2) 경기보강 패키지		10.4조원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0.5조원) 등 - 유통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36조원+α」규모 무역금융 확충 등(0.4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 안전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1.9조원) - 소상공인·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소상공인 창업·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0.4조원)	3.2조원
	•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 등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K-방역 수출 지원 등	2.4조원
	•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 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등(1.3조원) - 비대면 산업 육성(0.75조원) -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디지털화,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구축,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등 - 노후공공건축물 1.1만호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광역·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 등(0.4조원) -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 지원, 융자 등(0.35조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0.47조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1조원)	4.8조원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현행법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항 신설 등)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2항, 제115조 제4항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것임(안 제110조 제4항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법제처는 배출부과금 감면 조항의 취지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경우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음. 이에 감면대상인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부터 방해 받아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업자 등이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채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등의 품질·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못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큼에도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 및 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조치 및 제재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10조 제1항 제5호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3인)]

글로벌 M&A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동등한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빈발할 것임. 현재 미국, 독일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아야 함. 이에 우리 「상법」에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함 (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종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0조 제2항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업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은 업력(業歷)과 관계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분야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한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장외파생거래 증거금교환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7항 제1호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의원 등 18인)]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이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1년 8월 가슴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건, 2015년 7월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사건,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건, 2016년 7월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 사건, 2016년 9월 이케아 말론 서랍장 사건, 그리고 매년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되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20조제3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재생에너지 3020 정책)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신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3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규정과 같이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한 자가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 10조 및 제16조)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 · 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